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 분야	기술정보수당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가) 지급액 (1) 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2) 6급·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정·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3) 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4)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5)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규정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공무원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2) 외교부 소속의 외교정보 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경과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의2에 따른 해양경과·정보통신경과·특임경과의 경찰공무원과 함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중기(重機)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정보통신·공업·함정·항공·기상·보건직군 및 행정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p>중 6·7급 및 소방경·소방위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9급 및 소방장 이하에게는 월 20,000원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4)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7)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중 특히 우수한 실무 기술자	월 50,000원 이하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 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40,000원 이하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군 기상 전담부대 및 전담 부서에서 기상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30,000원 이하
	11)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	<p>가) 지급액</p> <p>(1)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p>

		<p>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p>	<p>(2)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3)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p> <p>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p>2. 교육 및 연구 분야</p>	<p>가. 연구 업무수당</p>	<p>1) 통일부 및 교육부 소속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p> <p>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p>	<p>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급: 월 25,000원 이하 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급: 월 15,000원 이하 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급: 월 10,000원 이하</p> <p>가) 지급액 (1) 장학관·교육연구관 (가) 5년 이상: 월 22,000원 (나) 5년 미만: 월 37,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가) 5년 이상: 월 17,000원 (나) 5년 미만: 월 32,000원</p> <p>나) 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중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p> <p>(비고)</p>

	<p>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p> <p>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p>
3) 연구직공무원	<p>가)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p> <p>나)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별정직 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서 감정 및 연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p>가)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원</p> <p>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35,000원</p> <p>다) 8급 상당 이하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원</p>
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건강	<p>가) 지급액</p> <p>(1) 5급(5급 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p> <p>(2) 6급(6급 상당 포함)·경감·소방경 이하: 월 40,000원</p> <p>나) 지급방법</p> <p>(1)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p> <p>(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비고)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p>

<p>강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p>											
<p>6) 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p>	<p>가) 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교수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나)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월 35,000원</p>										
<p>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p>	<p>월 20,000원</p>										
<p>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p>	<p>가) 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나) 위관, 5급·6급, 전문군무경력관 가군·나군: 월 20,000원 다) 부사관, 7급 이하 및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월 15,000원</p>										
<p>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p>	<p>(지급액)</p> <table border="1" data-bbox="735 1205 1342 1458"> <thead> <tr> <th>구분</th> <th>월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원장</td> <td>110,000원</td> </tr> <tr> <td>교수·부교수·조교수</td> <td>110,000원</td> </tr> <tr> <td>부장</td> <td>100,000원</td> </tr> <tr> <td>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td> <td>80,000원</td> </tr> </tbody> </table> <p>(비고)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p>	구분	월지급액	원장	110,000원	교수·부교수·조교수	110,000원	부장	100,000원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80,000원
구분	월지급액										
원장	110,000원										
교수·부교수·조교수	110,000원										
부장	100,000원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80,000원										
<p>나.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p>	<p>1) 국공립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5년 미만의 교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각종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도서·벽지 교육진</p> <p>(지급액)</p> <table border="1" data-bbox="759 1733 1257 1912"> <thead> <tr> <th>구분</th> <th>월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1)의 가)해당자</td> <td>18,000원</td> </tr> <tr> <td>1)의 나)해당자</td> <td>15,000원</td> </tr> <tr> <td>2)의 해당자</td> <td>20,000원</td> </tr> </tbody> </table> <p>(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p>	구분	월지급액	1)의 가)해당자	18,000원	1)의 나)해당자	15,000원	2)의 해당자	20,000원		
구분	월지급액										
1)의 가)해당자	18,000원										
1)의 나)해당자	15,000원										
2)의 해당자	20,000원										

	<p>「홍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p> <p>나) 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p>	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p>2)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학교·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통일교육원·국립외교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법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p>	
	<p>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p>	월 60,000원
	<p>4) 교장·원장,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원</p>	<p>가)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원(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p> <p>나)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원(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p>
다. 교직 수당	<p>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장·원장·교감·원감·</p>	월 250,000원

수석교사·교사.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월 50,000원

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 교사

월 70,000원

3) 고등학교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

(지급액)

(1) 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2) 다)부터 마)까지의 해당자: 월 50,000원

(3) 바)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p>·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p> <p>다)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p> <p>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p> <p>마)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p> <p>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p>	<p>월 130,000원</p>														
<p>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p> <p>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p>	<p>(지급액)</p> <table border="1" data-bbox="742 1467 1340 1758"> <thead> <tr> <th>호봉별</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31 ~ 40</td> <td>50,000원</td> </tr> <tr> <td>22 ~ 30</td> <td>45,000원</td> </tr> <tr> <td>14 ~ 21</td> <td>40,000원</td> </tr> <tr> <td>9 ~ 13</td> <td>35,000원</td> </tr> <tr> <td>5 ~ 8</td> <td>30,000원</td> </tr> <tr> <td>1 ~ 4</td> <td>25,000원</td> </tr> </tbody> </table> <p>(비고)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 및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전기·전자·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p>	호봉별	월 지급액	31 ~ 40	50,000원	22 ~ 30	45,000원	14 ~ 21	40,000원	9 ~ 13	35,000원	5 ~ 8	30,000원	1 ~ 4	25,000원
호봉별	월 지급액														
31 ~ 40	50,000원														
22 ~ 30	45,000원														
14 ~ 21	40,000원														
9 ~ 13	35,000원														
5 ~ 8	30,000원														
1 ~ 4	25,000원														

<p>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p> <p>나)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p>	<p>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위 지급액에 월 10,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p>
<p>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p>	<p>월 30,000원</p>
<p>7)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p> <p>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교장·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의 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원</p> <p>다)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교감</p>	<p>(1) 겸임교장: 월 100,000원 (2) 겸임교감: 월 50,000원</p>

		<p>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p>	<p>가) 지급액: 월 30,000원 나) 교육경력 외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법」(법률 제6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총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는 가)의 지급액에 월 50,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금만 적용한다. 다) 지급방법: 지급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p>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p>	<p>월 20,000원</p>
		<p>10)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p>	<p>월 20,000원</p>
<p>3 특수 업 무 분야 당</p>	<p>가 선박 및 합정 등 근무수 당</p>	<p>1) 교육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관세청·문화재청·기상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p>	<p>가) 지급액 (1)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2) 6급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3) 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4) 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5) 가산금 (가)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시험조사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 해양경찰청 소속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단정 등을 이용해서 외국어선 불법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7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p> <p>나) 지급방법</p>

1개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2)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가) 지급액

(1) 경찰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정 이상	172,000원	123,000원
경감	141,000원	101,000원
경위	133,000원	95,100원
경사	122,000원	87,800원
경장	112,000원	80,500원
순경	92,000원	65,800원
의무경찰	20,000원	20,000원

(2) 소방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소방령 이상	65,000원
소방경	50,000원
소방위	37,000원
소방장	34,000원
소방교	30,000원
소방사	21,000원

(3)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계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39,000원 이하
6급	32,000원 이하
7급	25,000원 이하
8급	20,000원 이하

나) 가산금

(1)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 (시·도소방공무원인 함정장에게는 월 10,000원으로 한다)을 가산 지급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 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근무자(의무경찰은 제외한다) 및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근무자로서 해상에서 고속 단정을 이용하여 외국어선 불법 어업활동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함정수당 지급액 및 가산금 나) 외에 추가로 월 7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3)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가) 특수함승무원: 월봉급액의 150% 이하 (나) 그 밖의 함정승무원: 월봉급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수륙양용 케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월봉급액의 55%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나. 항공수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인 경찰·소방공무원과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조종사</th> <th>정비사·전담사</th> </tr> </thead> <tbody> <tr> <td>경정, 소방령, 5급 이상</td> <td>631,700원</td> <td>313,400원</td> </tr> <tr> <td>경감, 소방경, 6급(3년 이상)</td> <td>505,300원</td> <td>279,100원</td> </tr> <tr> <td>경위, 소방위, 6급(3년 미만)</td> <td>404,200원</td> <td>217,800원</td> </tr> <tr> <td>경사, 소방장, 7급</td> <td>323,400원</td> <td>196,000원</td> </tr> <tr> <td>경장, 소방교, 8급</td> <td>258,600원</td> <td>184,200원</td> </tr> <tr> <td>순경, 소방사, 9급</td> <td>205,900원</td> <td>174,200원</td> </tr> <tr> <td>전문경력관 가군</td> <td>631,700원</td> <td>313,400원</td> </tr> <tr> <td>전문경력관 나군</td> <td>410,900원</td> <td>230,900원</td> </tr> <tr> <td>전문경력관 다군</td> <td>232,200원</td> <td>179,2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조종사	정비사·전담사	경정, 소방령, 5급 이상	631,700원	313,400원	경감, 소방경, 6급(3년 이상)	505,300원	279,100원	경위, 소방위, 6급(3년 미만)	404,200원	217,800원	경사, 소방장, 7급	323,400원	196,000원	경장, 소방교, 8급	258,600원	184,200원	순경, 소방사, 9급	205,900원	174,200원	전문경력관 가군	631,700원	313,400원	전문경력관 나군	410,900원	230,900원	전문경력관 다군	232,200원	179,200원
구 분	조종사	정비사·전담사																														
경정, 소방령, 5급 이상	631,700원	313,400원																														
경감, 소방경, 6급(3년 이상)	505,300원	279,100원																														
경위, 소방위, 6급(3년 미만)	404,200원	217,800원																														
경사, 소방장, 7급	323,400원	196,000원																														
경장, 소방교, 8급	258,600원	184,200원																														
순경, 소방사, 9급	205,900원	174,200원																														
전문경력관 가군	631,700원	313,400원																														
전문경력관 나군	410,900원	230,900원																														
전문경력관 다군	232,200원	179,200원																														

<p>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 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작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p>	<p>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50% 이하</p> <p>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p>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p>	<p>가) 지급액 월봉급액의 120% 이하</p> <p>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p>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p>	<p>가) 지급액</p> <p>(1)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월 50,000원</p> <p>(2) 6·7급 및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월 40,000원</p> <p>(3) 8·9급 및 소방교 이하: 월 30,000원</p> <p>나) 가산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5)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조종사</th> <th>정비사</th> </tr> </thead> <tbody> <tr> <td>5급 이상</td> <td>473,800원</td> <td>235,100원</td> </tr> <tr> <td>6급</td> <td>341,100원</td> <td>186,300원</td> </tr> <tr> <td>7급</td> <td>242,600원</td> <td>147,000원</td> </tr> <tr> <td>8급</td> <td>194,000원</td> <td>138,200원</td> </tr> <tr> <td>9급</td> <td>154,500원</td> <td>130,7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조종사	정비사	5급 이상	473,800원	235,100원	6급	341,100원	186,300원	7급	242,600원	147,000원	8급	194,000원	138,200원	9급	154,500원	130,700원
구 분	조종사	정비사																	
5급 이상	473,800원	235,100원																	
6급	341,100원	186,300원																	
7급	242,600원	147,000원																	
8급	194,000원	138,200원																	
9급	154,500원	130,700원																	
<p>다. 외무공무원·군인 등</p>	<p>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p> <p>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p> <p>가) 지급액</p> <p>(1) 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p> <p>(2) 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p> <p>(3) 3)의 해당자: 월 130,000원 이하</p>																		

<p>의 장 려수당</p>	<p>군의관 등의 특수장교 및 준사관·부사관</p> <p>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p> <p>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p> <p>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종사 군무원</p> <p>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p> <p>7)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p> <p>8) 잠수함 승조원 자격 취득자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 및 부사관</p> <p>9)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중인 사람, 잠수함 승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승무유지 훈련을 한 사람</p> <p>10) 비행부대 외의 부대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장교</p>	<p>(4) 4)의 해당자: 월 270,000원 이하</p> <p>(5) 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p> <p>(6) 6)의 해당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p> <p>(7) 7)의 해당자: 월 1,000,000원 이하</p> <p>(8) 8)의 해당자: 월 500,000원 이하(1년 범위)</p> <p>(9) 9)의 해당자: 월 500,000원 이하</p> <p>(10) 10)의 해당자: 월 800,000원 이하</p> <p>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p>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p>	<p>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p>	<p>가) 지급액</p> <table border="1" data-bbox="762 1957 1321 2136"> <thead> <tr> <th>계급·직무등급</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td> <td>300,000원</td> </tr> </tbody> </table>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300,000원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300,000원					

수당	<p>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p> <p>3)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직위 등(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공립 대학 간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p>	<table border="1" data-bbox="762 174 1321 548"> <tr> <td>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td> <td>200,000원</td> </tr> <tr> <td>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td> <td>100,000원</td> </tr> <tr> <td>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td> <td>50,000원</td> </tr> </table> <p>나)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국공립 대학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비고)</p> <p>1.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4)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란의 규정을 적용한다.</p> <p>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p>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1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5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1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50,000원																					
	<p>4)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p>가) 지급상한액</p> <table border="1" data-bbox="794 1205 1342 1570"> <thead> <tr> <th rowspan="2">근무기간</th> <th colspan="2">월 지급 상한액</th> </tr> <tr> <th>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th> <th>5급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1년 미만</td> <td>100,000원</td> <td>70,000원</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120,000원</td> <td>90,000원</td> </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 <td>180,000원</td> <td>150,000원</td> </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300,000원</td> <td>250,000원</td> </tr> <tr> <td>4년 이상</td> <td>450,000원</td> <td>400,000원</td> </tr> </tbody> </table> <p>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다.</p> <p>(비고)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p>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p>마 의료업무 등의 수 당</p>	<p>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p>	<p>가) 지급액</p> <p>(월 지급액, 단위: 원)</p> <table border="1" data-bbox="767 2096 1342 2136"> <tr> <td>의무직렬 공무원</td> <td>약무직</td> <td>간호직</td> </tr> </table>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	간호직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	간호직																				

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

지역별	자격	금액	렬 공무원	렬 공무원
가(군지역)	전문의 일반의	950,000 850,000	70,000	50,000
나(다·라 외 의 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850,000 750,000		
다(라 외의 도 청 소재지인 시 지역)	전문의 일반의	750,000 650,000		
라(특별시·광 역시지역)	전문의 일반의	700,000 600,000		

나) 가산금

-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의무경찰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 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치료감호소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광역시의 읍·면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월 50,000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

월 150,000원

	<p>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p>	
<p>바 특수직무 수당</p>	<p>1)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영화·공연무대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p>	<p>가)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나) 6급(6급 상당 포함) 및 7급(7급 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다) 8급(8급 상당 포함) 이하: 월 20,000원 이하</p>
	<p>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다)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부대(의무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라)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p>	<p>(1) 가)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나) 해당자: 월 20,000원 이하 (3) 다)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4) 라) 해당자: 야간근무(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중 112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긴급출동하는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p>	<p>가)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p>

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법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130,000원 이하 나) 3급 및 4급: 월 115,000원 이하 다) 5급: 월 100,000원 이하 라) 6급 이하: 월 60,000원 이하
5) 계호(戒護)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교정시설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170,000원 이하 (2) 가산금 한센병·결핵 환자, 정신질환자인 수용자(치료시설 및 조사·징벌·작업면제자 수용동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국제공항 및 출입국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p>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p> <p>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국인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농림축산식품부 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 보건복지 부의 국립검역소, 국토 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 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 품안전처, 기상청, 검찰 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 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비행장을 포함하 다)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별정직 또는 전문 경력관(전산업무담당 제외)</p> <p>나) 출입국항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 한 여객 및 적재화물 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 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해상교통 관제센터에서 근무하 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 직공무원</p>	<p>(가산금)</p> <p>(1) 가)의 지급대상자 중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 사로서 실제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2) 나)의 지급대상자 중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경찰청 소 속 해상교통관제사로서 실제로 해상교통업무를 수행하 는 자에게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p>	<p>가)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p>

<p>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p>	<p>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p>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p>	<p>가) 5급 이상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나) 6급 이하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나군·다군: 월 20,000원 이하</p>
<p>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수사경찰공무원 및 철도경찰직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p> <p>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검찰사무직 및 마약수사직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p> <p>나) 고소·고발 등 민원 사건을 전담하여 조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p> <p>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또는 범죄정보의 수집에 직접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p>	<p>(1) 가)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2) 나) 및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p>

<p>라) 과학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경찰공무원</p>	
<p>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분야 심사 또는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p>	<p>(지급액) 가) 고위공무원단: 월 100,000원 나) 3급 또는 4급: 월 90,000원 다) 5급: 월 80,000원 라) 6급(심사관): 월 60,000원 마) 6급이하(심사관보):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자는 심사관(보) 또는 심판관 발령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p>
<p>11) 소방청과 소방기관,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화재조사업무 또는 해상에서의 구조·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시·도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및 화재조사 업무 담당자로 한정한다) 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p>	<p>(1) 가) 또는 나)의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 (2) 다)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 (3) 라)의 해당자: 월 60,000원 이하 (4) 가산금 (가) 가)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라)의 해당자의 경우 인명구조 및 구조구급을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각각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나)의 해당자의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나)의 해당자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 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나)와 (다)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p> <p>라)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해양경찰구조대, 특수구조단, 항공구조사, 응급구조사 및 파출소 잠수·구조요원)</p>	
<p>1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서 공동위원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p>	<p>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p> <p>나)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월 600,000원 이하</p> <p>다) 5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500,000원 이하</p> <p>라) 6급(상당), 7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 월 400,000원 이하</p> <p>마) 8급(상당), 9급(상당) 또는 전문경력관 다군: 월 300,000원 이하</p>
<p>13)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 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p>	<p>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 상당 이상 포함): 월 550,000원 이하</p> <p>나) 4급(4급 상당 포함): 월 450,000원 이하</p> <p>다) 5급(5급 상당 포함) 또는 전문경력관 가군: 월 350,000원 이하</p> <p>라) 6급 이하 (6급 상당 이하 포함) 또는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월 250,000원 이하</p>
<p>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서 시체부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p>	<p>월 360,000원</p>
<p>15) 경찰청에서 검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p>	<p>월 240,000원 이하</p>
<p>16) 합동방재센터에서 화학 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p>	<p>월 50,000원 이하</p>
<p>17) 「국가공무원법」 제26</p>	<p>가) 지급액</p>

<p>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p>	<p>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p> <p>나) 지급방법</p> <p>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p>
<p>1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p>	<p>월 50,000원</p>
<p>19)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p>	<p>가) 지급액: 월 봉급액의 40% 이하</p> <p>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p>
<p>20)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국립 초·중·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p>	<p>월 30,000원</p>
<p>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구성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습지원단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p>	<p>일 8,000원을 지급하되, 월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p>

14등급	3,975	4,204	4,370	4,555	4,775	5,002	5,177	5,361	5,546	5,775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준장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 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434	3,630	3,763	3,921	4,106	4,302	4,449	4,607	4,764	4,961
4급, 6등급부터 8등급 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582	2,726	2,803	2,918	3,049	3,192	3,297	3,411	3,528	3,67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87	2,517	2,583	2,688	2,809	2,939	3,034	3,140	3,246	3,376
6급, 4등급	2,191	2,310	2,364	2,460	2,568	2,686	2,772	2,867	2,963	3,082
7급, 3등급	2,032	2,140	2,184	2,272	2,370	2,479	2,556	2,645	2,732	2,841

나) 현지화 지급국

(월지급액)

구분 계급· 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 달러)	일본, 요코하 마 (엔)	고베, 나고야, 나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엔)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라트비아 (유로)
14등급	6,954	645,055	589,680	3,600	3,867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준장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 까지, 대령·중령, 국가정	5,946	549,852	504,082	3,132	3,300
	4,897	451,805	415,197	2,653	2,714

보원 전문관 (3급 상당 직위)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4,249	392,694	360,203	2,353	2,362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891	358,150	329,957	2,187	2,157
6급, 4등급	3,535	326,821	299,711	2,022	1,969
7급, 3등급	3,243	298,035	274,964	1,888	1,798

구분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유로)	터키, 이스탄불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네스코 (유로)	핀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계급·직무등급					
14등급	4,394	4,545	4,572	4,747	36,60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749	3,876	3,897	4,048	31,203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081	3,230	3,204	3,327	25,645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680	2,808	2,788	2,892	22,37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446	2,564	2,543	2,640	20,347
6급, 4등급	2,235	2,341	2,323	2,410	18,572
7급, 3등급	2,038	2,134	2,117	2,196	16,931

구분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달러)	호주, 시드니, 멜번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	------------	-----------	---------------	----------------------	------------------	-----------------

계급· 직무등급				토론토 (달러)		(달러)
14등급	44,152	45,180	8,201	5,921	6,397	8,580
1급, 고위공 무원단 가등 급, 12·13 등급, 소장 ·준장	37,637	38,513	6,991	5,052	5,456	7,321
2·3급, 고 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 급부터 11등 급까지, 대 령·중령, 국 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0,917	31,660	5,743	4,155	4,547	6,019
4급, 6등급 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26,885	27,521	4,994	3,615	3,957	5,239
5급, 5등급, 대위, 국가 정보원 전문관	24,511	25,124	4,552	3,299	3,613	4,782
6급, 4등급	22,367	22,932	4,154	3,011	3,299	4,367
7급, 3등급	20,402	20,899	3,790	2,749	3,009	3,984

구분 계급· 직무등급	대만 (달러)	시안, 광저 우, 선양, 청두, 칭다오, 우한, 다롄 (런민비)	중국, 상하 이 (런민비)
14등급	169,530	31,171	32,551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 등급, 소장·준장	144,513	26,647	27,826
2·3급, 고위공 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 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국가 정보원 전문관(3 급 상당 직위)	118,717	22,245	23,227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4급 상당 직위)	103,232	19,296	20,151
5급, 5등급, 대	94,117	17,675	18,456

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6급, 4등급	85,880	16,054	16,763
7급, 3등급	78,339	14,730	15,380

구분 계급· 직무등급	애틀란 타, 휴스턴, 하갓나, 델러스 (달러)	미국, 국제연합, 뉴 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 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달러)	호놀룰 루 (달러)
14등급	4,601	4,821	4,989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957	4,146	4,288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 중령,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3,290	3,446	3,56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국가정보원 전문관 (4급 상당 직위)	2,877	3,011	3,110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650	2,772	2,862
6급, 4등급	2,421	2,534	2,614
7급, 3등급	2,236	2,338	2,411

다)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따른다.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구분	등급	1급	2급	3급

제1종 특수외국어 (불어·독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 [러시아어·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힌디어(인도) 베트남어·터키어· 피안어·태국어·이란어· 스웨덴어·터갈로그어· 그리스어·네덜란드어· 덴마크어 및 그 밖의 외교부장관이 외하는 외국어]	월 900달러 이하	월 600달러 이하	월 450달러 이하
급별 기준	특수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회화 정도의 수준	특수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회화 정도의 수준	특수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회화 정도의 수준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급·직무등급	감액(증액)률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4% 미만	14% 이상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1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12·13등급 소장·준장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2·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국무총리·중령· 국가정보원 (3급 상당 직위)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4급 6등급 부터 8등급 까지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소령, 국가 정보원 (4급 상당 직위)											
5급, 5등 국가정보 원 대위, 보 통관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6급, 4등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7급, 3등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2) 지급방법

(가) 감액(증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bigcirc \text{ 감액(증액)률(\%)} = \frac{\text{나}-\text{가}}{\text{가}} \times 100$$

“가” 는 액(증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 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증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증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